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8. 22.(월) 09:30	배포 일시	2022. 8. 22.(월) 09:30	
담당 부서 <총괄>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책임자	팀 장	고재영 (043-719-7780)
		담당자	사무관	박장호 (043-719-9311)
담당 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책임자	팀 장	김도균 (044-202-1720)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044-202-171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월 22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8월 22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51명**(전일 대비 20명 증가), **사망자는 65명**(전일 대비 1명 증가)으로 **누적 사망자는 26,109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구분	8.16.	8.17.	8.18.	8.19.	8.20.	8.21.	8.22.
재원중 위중증	563	469	470	492	511	531	**551**
사망자*	37	42	61	83	84	64	**65**
입원	450	648	705	608	427	333	**262**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76명**(86.4%),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1명(9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516명(93.6%), 사망자 중 50세 이상 63명(96.9%)

○ 8월 3주(8.14.~8.20.) 보고된 사망자 414명 중 **50세 이상은 405명**(97.8%)**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22명**(30.1%)**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 내외(8.3주차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 및 재원중 위중증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위중증	구성비(%)
계		**65**	**(100.00)**	**26,109**	**(100.00)**	**0.12**	**551**	**(100.00)**
성별	남성	33	(50.77)	12,737	(48.78)	0.12	294	(53.36)
	여성	32	(49.23)	13,372	(51.22)	0.11	257	(46.64)
연령	80세 이상	42	(64.62)	15,354	(58.81)	2.35	252	(45.74)
	70-79	11	(16.92)	6,011	(23.02)	0.54	129	(23.41)
	60-69	8	(12.31)	3,070	(11.76)	0.13	95	(17.24)
	50-59	2	(3.08)	1,086	(4.16)	0.04	40	(7.26)
	40-49	2	(3.08)	356	(1.36)	0.01	13	(2.36)
	30-39	0	(0.00)	122	(0.47)	0.00	12	(2.18)
	20-29	0	(0.00)	66	(0.25)	0.00	4	(0.73)
	10-19	0	(0.00)	15	(0.06)	0.00	4	(0.73)
	0-9	0	(0.00)	29	(0.11)	0.00	2	(0.36)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3%,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 '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완료군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 6월 3주 한주동안 분석대상 중 '미접종군'. '2~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640명**, **해외유입 사례는 40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9,04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299,377명**(해외유입 55,292명)이다.

○ 8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640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25,460.3명)이며, **수도권에서 25,360명**(43.2%), **비수도권에서 33,280명**(56.8%)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3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7.0%**, 준-중증병상 **60.7%**, 중등증병상 **46.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7%**이다. (8.21. 17시 기준)

구분 (단위: 개)	위중증				준중증				중등증				경증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사용	%	가용	보유	사용	%	가용	보유	사용	%	가용	보유	사용	%	가용
전국	1,801	847	**47.0**	954	3,124	1,896	**60.7**	1,228	2,332	1,074	**46.1**	1,258	116	24	**20.7**	92
수도권	1,218	563	**46.2**	655	2,070	1,400	**67.6**	670	1,040	482	**46.3**	558	116	24	**20.7**	92
비수도권	583	284	**48.7**	299	1,054	496	**47.1**	558	1,292	592	**45.8**	700	0	0	**0**	0

□ **8월 22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753,169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68,174명**(수도권 33,594명, 비수도권 34,580명)이다.

재택치료 현원	신규 재택치료자(8.21.)
753,169명	68,174명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 (8.22. 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8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003개소** (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7,801개소)가 있다. (8.21.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구 분	개소수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처방	확진자 진료	
					대면	비대면
합 계	13,782	13,006	11,981	10,804	10,927	10,924
원스톱진료기관 外	3,779	3,033	1,978	801	924	3,123
원스톱진료기관	10,003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8월 22일 0시 기준,

○ 신규 1차접종자 1,685명, 2차접종자 1,112명, 3차접종자 7,590명, 4차접종자 126,046명이고,

○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00,230명, 2차접종자수는 44,662,594명, 3차접종자수는 33,531,336명, 4차접종자수는 6,889,300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직전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전체	5세+	12세+	18세+
1차	45,098,545	1,685	45,100,230	87.9	89.9	95.7	97.4
2차	44,661,482	1,112	44,662,594	87.0	89.1	94.8	96.6
3차	33,523,746	7,590	33,531,336	65.3	66.9	71.2	75.0
4차	6,763,254	126,046	6,889,300	13.4			15.5

1) 안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안센 1차 접종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안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경우 8.19.(금)~21.(일) 간 실적임
2)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4차접종 연령별】

(단위 : 명, %)

구분	인구[1](A)	대상자[2](B)	예약자		예약률		접종자		접종률	
			신규[4]	누적(C)	인구대비(C/A)	대상자대비(C/B)	신규[4]	누적(D)	인구대비(D/A)	대상자대비(D/B)
총계	44,314,154	19,654,200	65,233	7,240,153	16.3	36.8	126,046	6,889,300	15.5	35.1
50세 이상(a+b+c+d)	22,318,306	19,310,321	63,099	7,120,945	31.9	36.9	122,810	6,781,771	30.4	35.1
60세 이상(a+b+c)	13,743,932	12,301,260	33,373	5,900,485	42.9	48.0	57,416	5,729,023	41.7	46.6
80대 이상(a)	2,455,738	2,075,552	3,886	1,354,532	55.2	65.3	6,464	1,324,810	53.9	63.8
70-79세(b)	3,883,747	3,565,565	9,134	2,088,849	53.8	58.6	15,733	2,039,547	52.5	57.2
60-69세(c)	7,404,447	6,660,143	20,353	2,457,104	33.2	36.9	35,219	2,364,666	31.9	35.5
60세 미만(d+e)	30,570,222	7,352,940	31,860	1,339,668	4.4	18.2	68,630	1,160,277	3.8	15.8
50-59세(d)	8,574,374	7,009,061	29,726	1,220,460	14.2	17.4	65,394	1,052,748	12.3	15.0
50세 미만(e)[3]	21,995,848	343,879	2,134	119,208	0.5	34.7	3,236	107,529	0.5	31.3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 '22. 8. 31일 기준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49세
4) 신규실적의 경우 8.19.(금)~21.(일) 간 실적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4차접종 대상별】

(단위 : 명, %)

구분	접종대상자(A)	신규 접종자(B)[3]	누적 접종자(C)	접종률(C/A)
면역저하자	1,397,947	6,845	518,948	37.1
기저질환자[1]		1,702	21,817	
요양병원·시설[2]	529,163	1,256	363,427	68.7
정신건강증진시설[2]	71,558	266	46,984	65.7
노숙인 생활시설[2]	7,023	216	4,659	66.3
장애인 생활시설[2]	42,377	1,049	18,436	43.5

1) 예진의사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등록한 18~49세
2)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수
3) 신규실적의 경우 8.19.(금)~21.(일) 간 실적임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단위 : 명)

구 분		예약		투약	
		신규	누적	신규	누적
계		72	1,578	17	514
성별	남성	43	920	14	306
	여성	29	658	3	208
연령	80세~	6	121	2	27
	70-79	12	355	2	109
	60-69	15	470	4	161
	50-59	23	321	8	111
	40-49	11	163	1	45
	30-39	2	64	-	25
	20-29	3	34	-	12
	12-19	-	50	-	24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4. 코로나19 후유증 Q&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7. 재택치료 안내문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 안내문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19.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지역별 확진자 현황(8.22. 0시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국내	58,640	7,376	2,730	3,565	3,008	2,646	2,026	1,280	470	14976	2,126	2,014	2,453	2,510	2,618	3,736	3,763	1,343	0
해외	406	19	4	8	106	15	29	2	5	24	9	12	24	18	15	36	25	11	44
합계	59,046	7,395	2,734	3,573	3,114	2,661	2,055	1,282	475	15000	2,135	2,026	2,477	2,528	2,633	3,772	3,788	1,354	44

< '20.1.3. 이후 누계 현황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명)*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7,376	19	4,411,616	(19.8)	46,392
부산	2,730	4	1,339,753	(6.0)	39,988
대구	3,565	8	944,389	(4.2)	39,590
인천	3,008	106	1,287,874	(5.8)	43,681
광주	2,646	15	654,813	(2.9)	45,422
대전	2,026	29	639,545	(2.9)	44,038
울산	1,280	2	486,029	(2.2)	43,334
세종	470	5	172,307	(0.8)	46,332
경기	14,976	24	6,013,003	(27.0)	44,326
강원	2,126	9	649,556	(2.9)	42,220
충북	2,014	12	689,358	(3.1)	43,154
충남	2,453	24	887,367	(4.0)	41,872
전북	2,510	18	747,879	(3.4)	41,854
전남	2,618	15	733,762	(3.3)	40,035
경북	3,736	36	985,191	(4.4)	37,508
경남	3,763	25	1,335,928	(6.0)	40,309
제주	1,343	11	308,385	(1.4)	45,568
검역	0	44	12,622	(0.1)	-
총합계	58,640	406	22,299,377	(100.0)	43,183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2 권역별 확진자 현황 (8. 22. 0시 기준)

(주간: 8. 16.~8. 22., 단위: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8. 22.(0시 기준)	**58,640**	**25,360**	**6,963**	**7,774**	**7,301**	**7,773**	**2,126**	**1,343**
주간 일 평균	**125,460.3**	56,690.0	15,015.0	14,898.4	13,868.3	19,371.3	3,800.1	1,817.1
주간 총 확진자 수	**878,222**	396,830	105,105	104,289	97,078	135,599	26,601	12,720
주간 발생률*	**243.0**	217.8	271.0	294.4	276.7	248.8	247.0	268.5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3 연령별 확진자 현황 (8.22. 0시 기준)

구분		8.16	8.17	8.18	8.19	8.20	8.21	8.22
국내 확진자 수		83,641	180,206	177,921	138,347	128,919	110,548	**58,640**
60세 이상	확진자 수	16,274	39,886	40,914	31,940	31,253	27,936	**11,992**
	%	19.5	22.1	23.0	23.1	24.2	25.3	**20.5**
18세 이하	확진자 수	15,550	28,904	31,756	24,764	24,842	20,808	**13,644**
	%	18.6	16.0	17.8	17.9	19.3	18.8	**23.3**

4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8.22. 0시 기준)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확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406	4	305	58	32	0	7	0	44	362	285	121
누계	55,292	668	29,779	9,306	12,558	1,792	1,189	0	12,622	42,670	34,279	21,013
		(1.2%)	(53.9%)	(16.8%)	(22.7%)	(3.2%)	(2.2%)	(0.0%)	(22.8%)	(77.2%)	(62.0%)	(38.0%)

5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8. 16.~8. 22.)

(단위 : 건, 명)

구 분	8.16.	8.17.	8.18.	8.19.	8.20.	8.21.	8.22.	주간누계	총 누계
총 검사 건수[1]	163,001	426,965	249,593	232,629	206,931	123,806	**집계중**	1,402,925	185,606,764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2]	113,745	308,243	161,328	149,554	129,300	76,459	**72,855**	1,011,484	37,794,053
신규 확진자 수[3]	84,103	180,771	178,553	138,812	129,411	110,944	**59,046**	881,640	22,299,377

1) (총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 선별진료소(통합) PCR 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 (신규 확진자 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 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붙임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8. 21. 17시 기준, 단위: 개)

구 분		危重症 중증 병상			準-重症 준-중증 병상			中等症 중등증 병상			무증상·輕症 생활치료센터		
권역	시도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전국		1,801	847	954	3,124	1,896	1,228	2,332	1,074	1,258	116	24	92
수도권	소계	1,218	563	655	2,070	1,400	670	1,040	482	558	116	24	92
	중수본										116	24	92
	서울	245	120	125	402	286	116	268	107	161	0	0	0
	경기	615	301	314	1,088	788	300	421	183	238	0	0	0
	인천	358	142	216	580	326	254	351	192	159	0	0	0
강원	소계	46	38	8	39	26	13	74	46	28	0	0	0
충청권	소계	114	57	57	190	94	96	451	217	234	0	0	0
	권역(중수본)										0	0	0
	대전	37	22	15	48	28	20	319	174	145	0	0	0
	세종	6	0	6	5	4	1	0	0	0	0	0	0
	충북	41	14	27	39	18	21	102	37	65	0	0	0
	충남	30	21	9	98	44	54	30	6	24	0	0	0
호남권	소계	175	76	99	259	140	119	333	162	171	0	0	0
	권역(중수본)										0	0	0
	광주	44	27	17	58	49	9	75	24	51	0	0	0
	전북	98	31	67	151	63	88	95	28	67	0	0	0
	전남	33	18	15	50	28	22	163	110	53	0	0	0
경북권	소계	92	44	48	221	114	107	153	61	92	0	0	0
	권역(중수본)										0	0	0
	대구	61	24	37	122	85	37	76	38	38	0	0	0
	경북	31	20	11	99	29	70	77	23	54	0	0	0
경남권	소계	134	66	68	311	111	200	239	99	140	0	0	0
	권역(중수본)										0	0	0
	부산	63	39	24	49	28	21	48	23	25	0	0	0
	울산	35	13	22	133	29	104	129	48	81	0	0	0
	경남	36	14	22	129	54	75	62	28	34	0	0	0
제주	소계	22	3	19	34	11	23	42	7	35	0	0	0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3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2022. 5. 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5월 3일 기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지는 지식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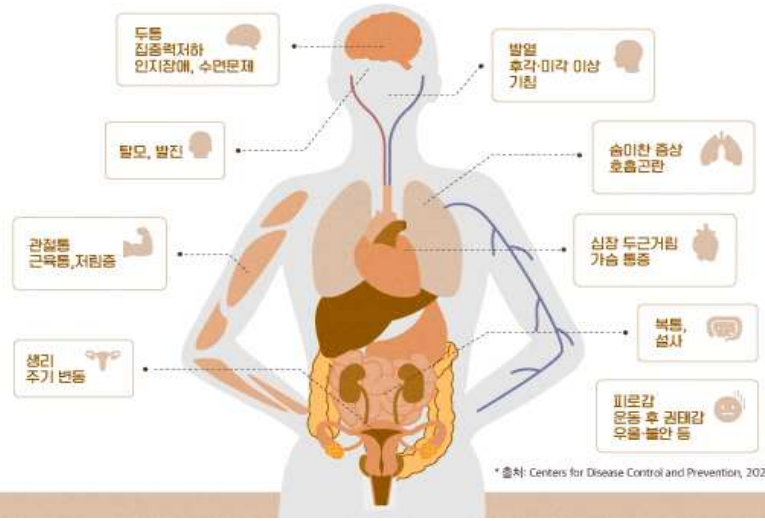
1. 코로나19 후유증이란?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 발병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WHO, '21.10.6)

※ 국가별 코로나19 후유증의 정의

- **(미국)** 4주 이상 유지되는 증상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 또는 재발하거나 새롭게 발현되는 경우
- **(영국)** 코로나19 완치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는 12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일부에서는 8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간주하기도 함
- **(독일)**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되어 일상 기능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위해
- **(호주)** 수 주 혹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감염 이후(보통 4주 후) 장기간 증상이 남아있거나 악화되는 것

- 일반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9.16.

1/2

2022. 5. 3. 질병관리청

2. 코로나19 후유증의 지속기간

- 코로나19 후유증의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WHO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하지만, **약 10~20%의 환자**는 감염 초기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합니다.
  -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초기 증상의 중증도 및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주 | 8주 | 12주 | 6개월 | 12개월

3. 코로나19 후유증의 치료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코로나19 후유증의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염 후 새로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불안,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심리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심리지원센터

- **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 http://www.ncmh.go.kr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

4. 코로나19 후유증의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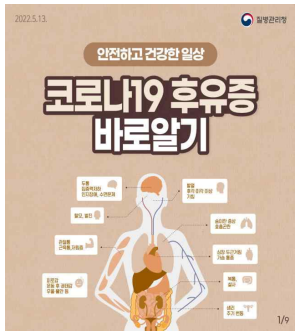
- 코로나19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염관리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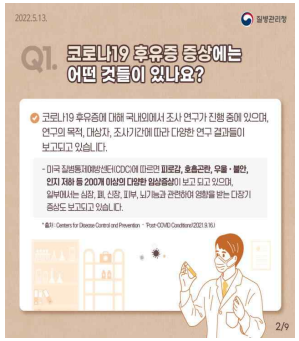
5.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감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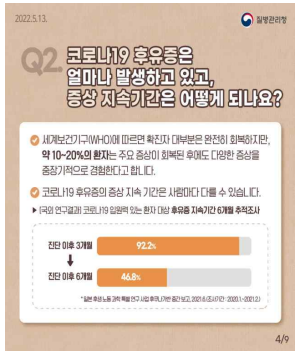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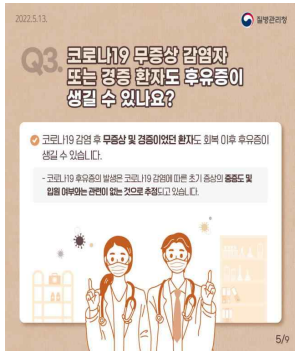
붙임 4 코로나19 후유증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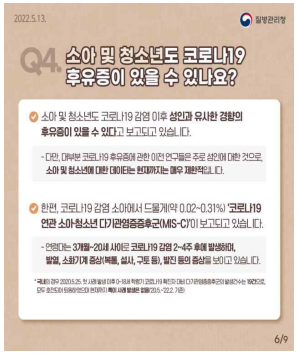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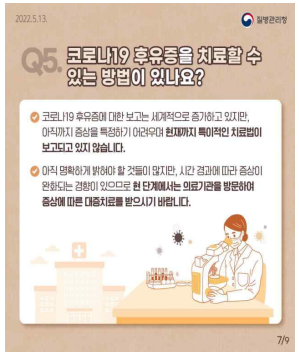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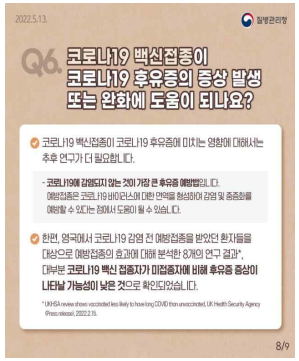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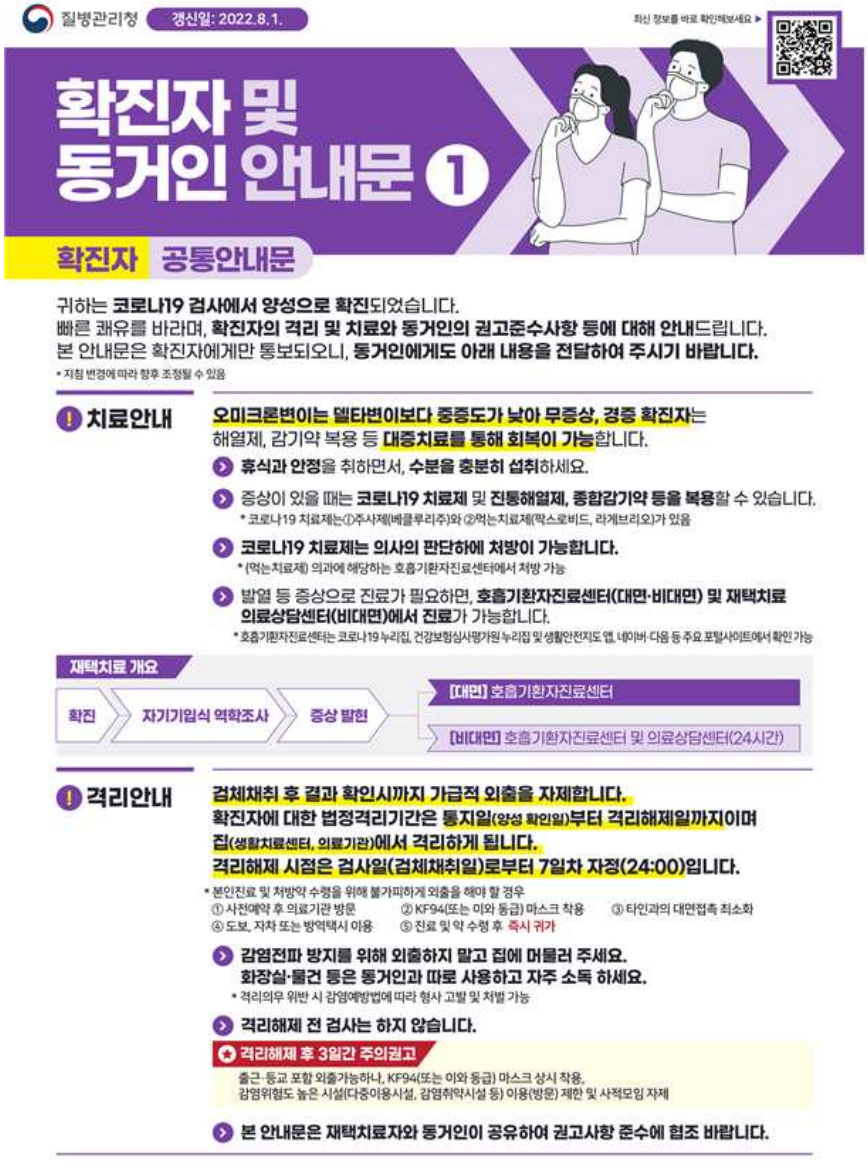








붙임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붙임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질병관리청 갱신일: 2022.8.1.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시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운영)**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7 재택치료 안내문

질병관리청 갱신일: 2022.8.1.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



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 및 전화 상담·처방 안내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세요.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 주세요.
-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은 경우,** 처방의약품은 가족 등 동거인(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 참조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비대면 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경우
-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 하는 경우
-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운영)**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갱신일: 2022.8.1.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유증상시 검사시행 의료기관 방문 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 관리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에 문의하세요.

붙임 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질병관리청 22.08.12. 13-1판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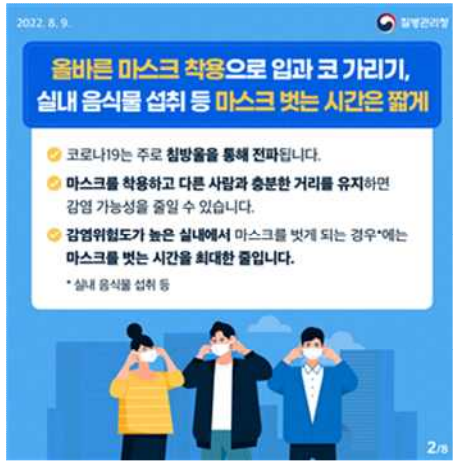
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우선순위 검사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등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감염취약시설(3종):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기: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단기: B1~2, C, C3~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붙임 10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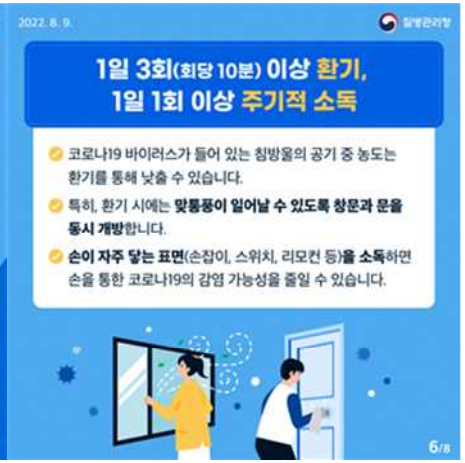
















붙임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저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 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 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 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kg/㎡) ▸**활동성 결핵**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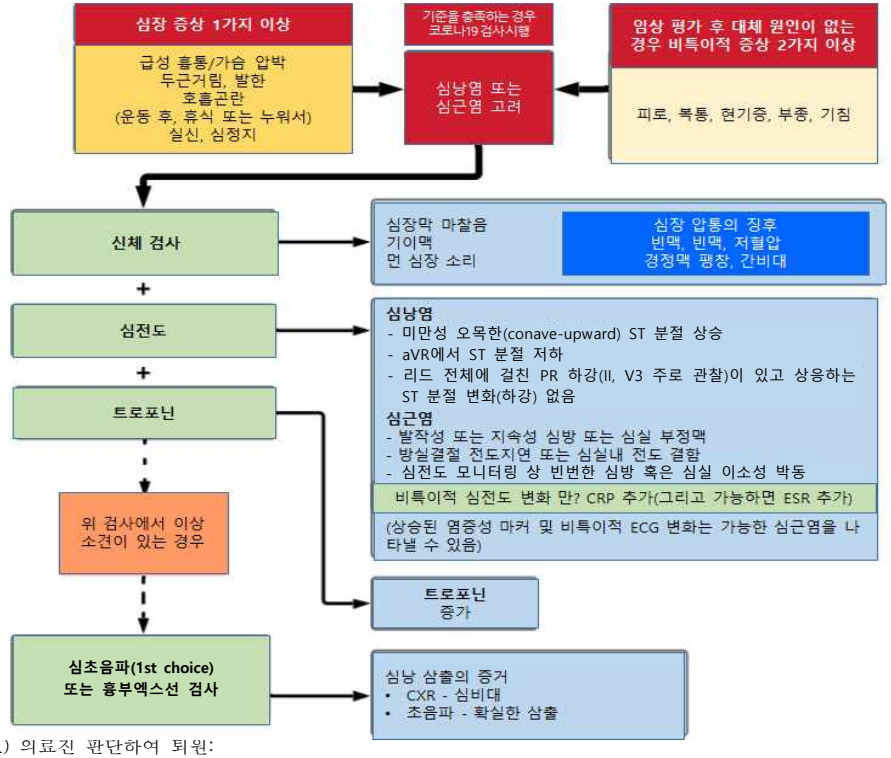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2 청소년 심근염 · 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A) 의료진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 /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고려

(B) 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 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 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의 4차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① 50세 이상 연령층
②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③ 18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2 접종간격

3차접종 후 120일 이후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 접종으로 접종 가능

3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얀센백신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접종

4 접종방법

①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 또는 전화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대리예약 가능
②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의료기관 문의)
③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 기타 주의사항

18-19세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 **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의 4차접종(3차포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접종대상

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이상
2차·3차접종 완료자

2 3·4차 접종간격

① 3차접종
2차접종 후90일 이후 (얀센 백신은 60일)
② 4차접종
3차접종 후 120일 이후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3차접종 완료 90일 이후부터 당일 접종으로 접종 가능

3 백신종류

mRNA백신(화이자·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 얀센백신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접종

4 접종방법

① **방문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또는 시설계약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②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③ **위탁의료기관접종** 종사자 및 거동 가능한 입소자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4차접종 대상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의료법 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 운영 기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의 3차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18세 이상 성인 중 2차접종 완료자



2 접종간격

2차접종 후 90일 이후

(얀센백신의 경우 60일 이후)



3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백신(화이자 · 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얀센백신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후 접종



4 접종방법

①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 또는 전화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대리예약 가능

②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의료기관 문의)

③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 기타 주의사항

18-19세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 **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의 기초(1·2차)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① 18세 이상 성인 중 1차 미접종자

② 1차접종 완료자 중 2차 미접종자



2 1»2차 접종간격

8주 화이자

8주 모더나

3주 노바백스



※ 접종권고간격 초과한 대상자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접종

3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mRNA백신(화이자 · 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4 접종방법

① **사전예약** 사전예약누리집 또는 전화예약 (1339, 지자체콜센터) *대리예약 가능

②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의료기관 문의)

③ **자체접종** 자체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종사자 접종 *1-4차접종 대상자 접종 가능

※ 기타 주의사항

18-19세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 **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7 코로나19 소아 · 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의 소아·청소년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① 소아 : 만 5-11세
(주민등록상 2017년생 생일 이후~2010년생 생일 전)
② 청소년 : 만 12-18세
(2010년생은 생일이 지난 사람)
※ 18세 이상은 얀센(mRNA 백신 급기시)·노바백스 가능

2 백신종류

① 소아 : 소아용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0.1㎎/mL(5-11세용)주황색
② 청소년 :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



3 접종간격

① 소아 : 1차→2차 8주
② 청소년 :
1차→2차 8주
2차→3차 3개월*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
※ 기본접종의 경우,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3주 간격으로 접종 가능



4 접종방법

①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은 14세 이상으로 제한
②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③ 자체접종 입원 중인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기타 주의사항

-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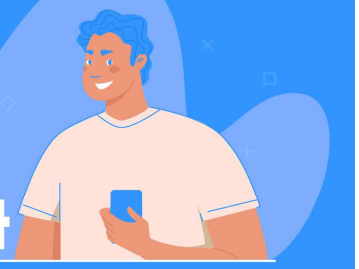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2022.07.27.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의 외국인 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1 접종대상

① 소 아(만 5-11세) : 1·2차접종
② 청소년(만 12-17세) : 1-3차접종
③ 성 인(만 18세 이상) : 1-4차접종*
*4차접종은 3차 접종 완료한 5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2 접종간격

① 1·2차접종 소아용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8주 노바백스 3주
② 3차접종: 2회접종 3개월 이후
*얀센은 1회 접종 후 2개월 이후
③ 4차접종: 3차접종 4개월 이후
*얀센은 2회 접종 후 4개월 이후

3 백신종류

① 만 5~11세 : 소아용 화이자
② 만 12~17세 : 화이자
② 만 18세 이상 :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는 30세 이상 권장
**얀센 백신은 특수한 경우에만 접종 가능



4 접종방법

① 등록 외국인 온라인 예약, 전화예약 및 당일접종
② 미등록외국인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전화예약 또는 접종기관 방문예약
③ 해외에서 기초접종을 마친 외국인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력 등록 후 예약

※ 기타 안내사항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

온라인 예약 사이트 https://ncvr.kdca.go.kr
전화 예약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 예약
당일 접종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등록 후 당일 접종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19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